탄 원 서

피고인 여인형 | 서울고등법원 형사제1부 | 2026노1560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11 | 군형법상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도입 | 군 지휘관의 책임을 엄정히, 각 개인의 범의를 정확히 보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실제 관여 행위와 당시 인식이 적법한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되기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군 지휘관이 국가의 군사력을 사적·위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엄중한 형사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건에 여러 지휘관이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각자의 범의와 범행 기여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군 직위만을 이유로 면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정확히 전제한 상태에서, 여인형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직권남용의 요건이 각각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엄밀히 살펴 달라는 무죄 탄원을 올립니다.

1. 원심의 유죄 판단과 특별검사의 불리한 주장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인형 피고인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선고 보도에는 무인기 작전에 관한 논의와 공유, 비상계엄 관련 회합 및 휴대전화 메모 등이 주요 정황으로 등장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인정했고, 관계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회합에 계속 참석하고 메모로 상황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주장입니다. 다만 특검의 항소심 주장을 곧 확정 사실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과 항소심 증거를 함께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2. 여인형 피고인에게 적용된 군형법 제14조의 정확한 법리를 적용해 주십시오

여인형 피고인에게 문제 된 일반이적 혐의는 다른 피고인들의 형법 제99조와 구별되는 군형법 제14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특히 제14조 제8호는 다른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북한과의 사전 통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인의 신분과 직위, 무인기 작전의 존재, 회합 참석만으로 곧바로 군사상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개인의 가담과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 그로 인한 군사상 이익 침해의 내용, 그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담,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인식과 고의를 서로 구별하여, 행위 당시 적용 법령과 실제 공소사실에 맞추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24년 10월 18일·23일 메모의 불리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보아 주십시오

공개된 2025년 11월 기소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 피고인의 2024년 10월 18일자 휴대전화 메모에는 북한의 대응을 유도할 표적과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등에 관한 구상이 나타나고, 10월 23일자 메모에도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행동을 명분화하는 구상이 거론되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단순한 메모라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모 중 어느 문장이 실제 작전 이전에 작성되었는지, 전체 문맥에서 어떤 뜻인지, 작성자의 구상이 다른 관련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것이 특정한 명령·승인·실행으로 이어졌는지, 각 실행의 위험과 군사상 불이익에 관한 인식까지 뒷받침하는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불리한 문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문구가 법률상 무엇을 어느 정도 증명하는지 세밀히 밝혀 주십시오.

4. 메모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구상과 실행을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휴대전화 메모가 적법하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그 기재가 개별 범죄사실을 얼마만큼 입증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원심이 메모를 판단자료로 활용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으므로 그 증거가 배제되었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판에서 다투어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과 여인형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메모의 문구, 포렌식상 작성·수정 시각, 당시 회의의 객관적 일정, 관련자와의 대화 및 연락, 실제 무인기 운용·보고 기록 사이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상이 실행에 반영되었다면 그 사실을 무겁게 평가하되, 제안·의견·상황평가를 실제 실행 지휘 또는 모든 결과에 관한 공동범의와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5. 서로 다른 메모와 서로 다른 재판의 진술은 각각의 범위를 지켜 주십시오

2026년 9월 7일 별도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2024년 11월 작성된 메모의 일부 약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 의미가 계엄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관하여 기존 수사기관의 해석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진술은 그 자체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는 확정 증거가 아닙니다. 또한 11월의 약어 메모와 10월 18일·23일의 대북 관련 메모가 같은 자료라고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 별도 진술이 이 사건 기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는 원문과 반대신문 경과, 다른 증거의 일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재판부께서 이 사건 항소심 기록에 적법하게 현출된 자료만으로 각각의 메모가 증명하는 범위를 정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6. 회합 참석·의견 제시·상급자 건의·작전 실행 관여를 단계별로 구분해 주십시오

특별검사는 여인형 피고인이 여러 회합에서 계엄 여건 조성을 구상한 핵심 기획자라고 주장합니다. 원심은 그의 가담을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항소심 보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수동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무죄의 근거가 아니며, 직접 현장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별 회합의 참석 일시, 피고인이 제시한 구체적 의견, 그 의견을 받아 실행 여부를 결정한 사람, 실제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조정 경로, 이후 작전의 수정과 반복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여부를 나누어 살펴 주십시오. 피고인의 발언이 어느 명령이나 작전 변경으로 구현되었는지를 개별 증거로 연결한 뒤 그 법률적 의미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공동정범의 범의와 기능적 기여를 각 실행행위에 연결해 주십시오

형법상 공동정범의 법리는 단순한 동석이나 역할의 유사성보다 공동의 범의와 범행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중시합니다. 군 조직에서는 지휘권의 존재가 중요한 정황이지만, 여인형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결정권과 정보 접근 권한을 사용했는지, 다른 피고인들과 어느 범위에서 의사를 함께했는지, 자신의 관여로 실제 실행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기록에 기초해 판단하여 주십시오.

작전 계획에 관한 추상적 의견을 공유한 사실, 구체적 위험을 인식하고 실행을 촉진한 사실, 군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실행 결과 중 피고인에게 공동범행으로

귀속되는 범위를 결정할 때 이 단계들을 한 번 더 분리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8. 계엄 명분 조성 목적과 군형법상 일반이적의 고의는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최종 정치적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구체적 군사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였다면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의 최종 목적을 몰랐다는 설명 하나만으로 일반이적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여인형 피고인 역시 무인기의 경로·운용 방식·노출 위험·군사력 손실 가능성과 그 법률상 의미를 동일하게 인식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피고인이 실제 보고받은 사항과 당시 기대하거나 용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회합·메모·보고·실행의 시간순서로 검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9.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침해 내용과 피고인 개인의 인식을 대조해 주십시오

원심은 무인기 전력과 작전정보의 노출, 군사력의 소모 및 운용상 불이익 등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침해로 평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실제 무력충돌이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판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군사상 이익은 인명피해만을 뜻하지 않고 군 전력의 노출과 작전 수행 능력에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정보가 상대방에 실제 노출되었는지, 자산 손실이 군의 능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다른 불이익이 작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고인이 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의 내용을 어느 범위에서 인식했는지는 나누어 심리되어야 합니다. 군사상 이익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단과 그 침해를 피고인의 특정 가담행위에 귀속할 수 있다는 판단 사이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10. 수동적 가담을 무죄의 자동 근거로 삼지 않되 그 기초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양형에 반영했다는 특별검사의 항소심 주장은 무죄를 확정해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판결문에서 어떠한 근거 사실을 전제로 사용되었는지, 피고인의 정보·권한·관여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실제 판결 이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일정 범위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실제 책임 정도와 양형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에서 선처나 형량 경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 개인의 범의와 가담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구체적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죄판단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1. 직권남용죄도 권한 행사·의무 없는 행위·인과관계를 별도로 보아 주십시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는 평가뿐 아니라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도 직권남용 행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를 별개로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인형 피고인이 가진 실제 직무권한과 다른 부대에 미친 영향력,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중 어느 대상에게 어떠한 지시 또는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실행했고 왜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인지, 피고인 자신의 가담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직접 지휘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 책임이 배제된다는 주장도 하지 않겠습니다.

12. 항소심에서 필요한 검증은 비공개 자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안보 사건의 특성상 공개되지 않은 작전기록·진술조서·군사기밀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 전문이나 양측 항소이유서 전문, 비공개 공판기록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원심이 특정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무 증거 없이 판단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재판에서 나온 진술이 곧바로 이 사건의 반증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은 그처럼 중대한 불리한 증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의 실제 심판 범위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메모의 의미, 각 회합의 역할, 공동정범의 성립, 군사상 이익 침해와 고의, 직권남용의 구체적 결과를 공소사실별로 확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13. 시민으로서 이 탄원을 드리는 이유

군의 명예는 위법한 행위를 무조건 감싸는 데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가진 누구라도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받는 데서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여인형 피고인에 관한 불리한 메모와 회합 정황이 실제로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 의미를 축소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 피고인의 책임을 하나의 이야기로 간단하게 정리하기보다, 여인형 피고인의 행위·인식·기여·결과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군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어 |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의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무죄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께. 여인형 피고인에 관한 원심의 불리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주장을 모두 소송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시되, 군형법 제14조에 따른 군사상 이익 침해행위의 개인적 귀속, 공동의 범의와 실행 기여, 관련 결과에 관한 인식 및 고의, 직권남용죄의 권한 행사와 의무 없는 행위의 결과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소사실이나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이는 선처나 감형을 요청하는 글이 아니라 법률과 적법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 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달라는 시민의 탄원입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울고등법원 형사제1부 귀중